

## 국내 통번역 자격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 지 영  
(고려대)

### 1. 서론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는 고객은 통역을 실제 들어보거나 혹은 완성된 목표 텍스트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선택한 통번역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 심지어 통번역의 결과물을 직접 확인한다 하더라도 품질에 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목표 언어를 전혀 모른다면 통역 또는 번역된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변경, 누락이 있더라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재화(서비스)의 종류는 탐색재, 경험재, 신뢰재<sup>1)</sup>로 구분하는데, 통번역은 경험재 혹은 신뢰재에 해당한다. 탐색이나 경험을 통해 재화의 품질

---

1) 탐색재(search goods)란 구매하기 전 다른 제품과의 비교 등 탐색을 통해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경험재(experience goods)는 소비한 후에야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재화이다. 신뢰재(credence goods)는 소비한 후에도 품질을 판단할 수 없는 재화이다(Akerlof 1970).

을 판단할 수 있는 여타 재화와는 달리, 통번역은 서비스 이용 전은 물론 후에도 사용자가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서비스에 대해 공급자만큼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고객이 통번역을 의뢰한 외국어를 스스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을수록 커진다.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번역 고객들은 개별 통번역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고품질 서비스 보다는 가격이 낮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역선택을 하게 된다. 물론 정보 비대칭성과 역선택은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사용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발성으로 통번역을 의뢰하는 고객들은 정보 비대칭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역선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공급되는 서비스의 평균 품질과 소비자들이 지불하려는 가격이 더 낮아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고품질 서비스가 퇴출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Akerlof 1970). 나아가 저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 피해를 구매자 뿐 아니라 구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입게 되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 협정서에 오역이 있는 경우 협정 체결이나 협정서 번역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련 산업이나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그 품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자에 대한 각종 정책과 규제를 시행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한 방편 중 하나인 자격 제도는 서비스 제공자의 품질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것을 정부 또는 사업자 단체와 같은 제 3자가 확인해 주는 품질 보증 방안이다(고영선, 김두열, 윤경수, 이시욱, 정완교 2009: 26-33). 통번역 자격 제도는 통번역 능력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능력있는 통번역사를 양성하고 저품질 서비스의 비중을 낮춰 통번역 사용자를 보호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효용을 창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통번역 자격 제도 도입에 관해 국내에서 진행된 논의를 살펴본 후 국내외 통번역 자격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통번역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 문헌 연구

### 2.1 인증과 자격 제도

본 논문을 작성 중인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 사용된 ‘통번역사의 수준별, 분야별 인증(홍정민 2015)’, ‘국가인증제도(한현희 2015)’ 등의 표현과 ‘언어, 통번역 평가 및 인증(2016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국방어학원 춘계 학술대회)’과 같은 학술대회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인증’이란 용어는 통번역 자격 제도에 관한 국내 논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인증(accredit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INT Project Discussion Paper November 2013). 하지만 표준화 용어에 관한 표준인 KSA ISO/IEC Guide 2에서는 ‘인증’을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평가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국제적으로 ‘인증’이란 주로 ‘인증을 시행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국내에서도 자격증 자체나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 등의 평가 체제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인증’보다는 ‘자격’ 또는 ‘자격 제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자격’을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신용철 2002: 1), 그 밖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관련 정부 기관들 역시 개별 자격증의 분야나 특성과 관계없이 가장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의미로 ‘자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신명훈, 박종성 2005; 고영선, 김두열, 윤경수, 이시욱, 정완교 2009). 반면 ‘인증(accreditation, attestation)’이란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 기제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인 기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법률학 대사건 1996; 신명훈, 박종성, 2005: 18 재인용). 즉, 교육기관이나 사회사업기관 등이 요구되는 활동이나 행위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관행을 고려하여 논문에서는 ‘인증’ 대신 ‘자격 (제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2 국내 통번역 자격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통번역 자격 제도 도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발간한 ‘번역사 인증제와 번역 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번역사 인증제 기본 모형 개발 연구’를 들 수 있다. 2005년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통번역 자격과 교육 제도를 비교하였다(박혜주, 권지현, 박애리, 오미형, 김상진 2005). 이 연구는 통번역 교육과 자격 제도를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한 두 수레 바퀴로 보고, 국가 공인 통번역 자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 그 종류와 규모를 파악한 후 실제 시험의 구성 및 평가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ibid.: 176-177).

이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번역 시험 모형을 개발하였다(박혜주,곽성희,이연향,정연일,박소연 2006). 이는 번역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등급으로 구분된 자격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었다. 1차 시험은 목표 언어 해독 능력과 도차어 생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문체와 번역중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단답형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번역시험이다. 잠재 신규 번역사를 양성한다는 시험 모형 개발의 목적에 따라 통번역대학원 재학생,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생, 기존 번역사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모의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 영역별 개선점을 도출하였다(ibid.: 114-115).

앞의 두 연구가 일반적인 통번역 능력을 측정하는 자격 제도에 관한 연구였던 반면 특정 분야에 국한한 통번역 전문 자격 제도 연구도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주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법정통역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법정 통역사의 고용 현황과 근무 환경, 법정 통역에 대한 인식, 법정 통역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2008). 이 연구에서는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홍콩의 법정 통역 자격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법정 통역 자격 제도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관련 법 제정, 법정 통역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인증을 담당할 주무 부서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료통역 자격에 대한 연구 역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의뢰로 수행하였다(정철자, 곽중철, 정연진, 이하나

2009). 동 연구에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행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의료 통역사 채용 기준, 고용 현황, 채용 후 교육, 사용자 만족도, 의료 통역 자격 제도 도입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민관 협업식 의료 통역 인증 모델을 제시하고 의료 통역 인증 시험 과목으로 ‘통번역 실기’, ‘문화 간 의사소통’, ‘기초 의학 지식 및 용어’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통번역 자격에 대한 상세하고 방대한 연구로 국내에서도 통번역 자격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자격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학번역원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 지 십여 년이 흐른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번역 자격 제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 3. 연구 방법

#### 3.1 분석 기준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신용철 2002: 6; 신명훈, 박종성 2005: 25-28) 통번역 자격 제도를 운영주체, 기능, 내용별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격 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국가 자격’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별로는 특정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는 ‘전문 자격’과 여러 직종에 걸쳐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증명하는 ‘일반 자격’이 있다. 따라서 ‘전문 자격 제도’라 할 때, ‘전문’이라 함은 ‘검증하는 능력의 수준’이 아닌 ‘검증의 범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기능별로는 업무독점형 자격과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구분되는데, ‘업무독점형 자격’은 해당 자격 소지자만이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면허’로 부르기도 한다. 반면 ‘능력인정형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

음을 입증하나 그 자격이 없다고 해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외 통번역 자격 제도를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국가 자격의 경우 공공 기관이 통번역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민간 자격은 운영 주체가 어떠한 성격의 단체인지, 자격 제도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법정 통역, 의료 통역을 검정 범위로 하는 것은 전문 자격이고 그 외에는 모두 일반 자격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검정 범위’를 분석 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 ‘검정 방법’ 항목을 추가하여 시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부여 등급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격 취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 3.2 분석 대상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자격 제도는 총 10가지의 국내의 시험으로, 통역 자격 4종, 번역 자격 4종, 통역과 번역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자격 2종이다. 통역과 번역 모두 출제하는 자격 제도는 국내 국제통번역협회의 ITT통역번역시험과 호주 국가 통번역사 인증기구(NAATI) 시험으로 통역과 번역 중 희망하는 과목에만 응시할 수 있다. 분석한 국내외 자격 제도는 다음과 같다.

2016년 7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격 제도인 한국번역가협회의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협회의 ITT통역번역시험,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IP번역사 자격검정시험의 세 가지를 분석하였다<sup>2)</sup>. IP번역사 자격만이 특

2) 본 연구는 집필 시점에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모든 통번역 자격 시험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자격 제도 이외에도 과거에는 ‘실무번역능력인증시험’, ‘영상번역능력인증시험’, ‘영어번역자격시험(ETAT)’, ‘번역능력인증시험’ 등이 존재했으나 폐지되었다(박혜주 외 2005: 81-88). 국내에서 2009년 첫 의료 통역사 교육 과정이 개설된 후(곽중철 2010) 2016년 10월 첫 의료통역검정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나(윤수현 2016), 본 논문의 작성 시점인 2016년 7월에는 해당 자격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국내 통번역대학원 중 한 곳에서 ‘통번역 인증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학교 졸업자만 응시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자격 시험이 아닌 해당 대학원의 졸업 시험으로 간주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히 번역에 관한 전문 시험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일반 시험이다.

해외 자격 제도 중에서는 선진적인 통번역 자격 제도로 인정받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통번역 자격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 중 일반 자격 제도는 전미번역사협회(ATA) 번역 시험, 캐나다 번역사·전문용어전문가·통역사위원회(CTTIC) 번역 시험, 호주 국가 통번역사 인증기구(NAATI) 통번역 시험이며, 전문 자격은 미연방법원통역자격증시험(FCIC), 미주법원통역사자격인증컨소시엄(SCICC), 전미의료통역사자격증위원회(NBCMI), 보건통역사자격증위원회(CCHI) 시험이다<sup>3)</sup>.

제시한 해외 통번역 자격 제도 중에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다뤄진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가 해외 자격 제도를 주로 국가별로 정리하여 소개한 반면,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접근방식을 차별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자격 제도 중에는 최근 시험의 구성,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여 개선한 것들도 있으므로, 이미 알려진 자격 시험이라 하더라도 일정 시점을 두고 재분석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3) 본 논문에서 분석한 해외 자격 제도 중 커뮤니티 통번역 자격이 다수 포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 통번역 교육과정은 고등교육기관에 개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되는 인력은 주로 회의통역 등 고급 통역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후 이민 등으로 인해 일반 대중을 위한 통번역 수요가 생겨나자 커뮤니티 통번역 교육과정과 자격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회의 통역 분야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을 중심으로 인력의 양성과 실력 검증이 이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 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통역사 자격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 회의통역사 자격 제도가 있고, 호주 NAATI 시험의 최고 등급 또한 숙련된 국제회의통역사 수준의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회의통역사 자격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으며, NATTI 자료 역시 유료 판매 중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

## 4. 분석

### 4.1 국내통번역 자격 제도

#### 4.1.1 운영 주체

국내에서 번역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번역가협회, 국제통역번역협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자격 시험의 목적을 ‘통번역사 양성’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 단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간략히 설립 취지와 주요 활동,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는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번역가 양성과 권익 옹호를 위해 1971년 창립되어 2016년 현재 회원수는 2천 여 명이다(김고금평, 김유진, 박다혜 2016). 1974년 국제번역가연맹(FIT)에 가입하여 FIT 내 연맹이사단체이자 한국을 대표한다. 한국번역가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번역능력인정시험 1급 또는 2급에 합격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번역사가 아니더라도 협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출판인, 편집인 등 관련 업종 종사자, 이사회가 승인한 번역 관련 단체나 기관 또한 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 문화의 해외 전파’와 ‘외래 문화의 정확한 국내 전파’를 단체의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학 작품의 번역이나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실시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은 1994년부터 시행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통번역 자격 시험이다. 하지만 시험 준비를 위한 유료 교육 과정 운영이나 문제집 판매 등의 상업적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ITT통역번역시험을 주관하는 국제통역번역협회는 1999년 ‘국제통번역사절단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단체로, 2009년부터 ITT통역번역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통번역 시험을 실시해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사단법인이며 국제번역가연맹(FIT) 준회원 기관이다. 국제통역번역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단체의 설립 취지를 ‘한국의 통역번역 표준을 선도’, ‘통번역사의 권익 보호’, ‘한국의 문물을 세계에 홍보’하는 것 등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혁을 살펴보면 ITT

시험 및 이와 연계된 온오프라인 교육 사업, 외국어 경연 대회 실시, 통역 자원 봉사 알선 등 실질적으로는 대학생 대상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통역번역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ITT 시험 1, 2급 합격자이거나, 해당 협회나 국내 통번역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관 회원 제도 또한 두고 있어 국내외 통번역과 관련된 교육 기관, 연구 기관 및 단체, 통번역업체를 심사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IP번역사 자격검정 시험의 시행 기관인 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2008년 설립되었다. 정부 산하 기관으로 특허청이 위탁하는 사업과 그 밖에 지식재산과 관련된 연구, 출판,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IP번역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한영 IP 번역 문제은행을 개발해 왔다. IP번역사 시험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IP번역사 시험 이외에도 IP정보검색사, IP정보분석사 시험을 주관한다.

이상과 같이 각 단체의 주요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한국번역가협회는 문학 등 주로 출판 번역 분야에 주안을 둔 번역사 단체이다. 국제통역번역협회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 주요 활동 내역을 고려할 때 외국어 교육 사업자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정부 유관 단체로 해당 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자격을 운영한다.

#### 4.1.2 검정 방법

번역능력인정시험, IP번역사 자격검정시험은 번역 시험인 반면, ITT통역번역시험은 통역과 번역 모두를 검정한다. 이들 시험의 출제 과목, 등급, 시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번역가협회가 실시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해서는 연 3회 3단계로,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는 연 1회 2단계로 검정한다. 1급은 ‘전문 번역가’ 등급으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할 수 있음을, 2급은 ‘우수 번역가’로서 뛰어난 원문 이해력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번역 능력을 갖췄음을, 3급은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업무상 필요한 실용 지식으로서의 외국어 실력을 갖췄음을 인정하는 ‘실용 언어 능력’ 등급이다. 시사적 텍스트가 출

제되며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양방향 번역 시험을 모두 치러야 한다. 채점 내역과 답안은 정책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응시자 개별 시험지 및 개별 점수 공개

‘...시험이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관계로 외국어 능력, 전문 지식, 관점, 취향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일관성 있는 시험 시행을 위해 출제문제와 그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번역가협회 홈페이지)

ITT통역번역시험은 연 6회 영어,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번역 시험으로 전문통번역, 비즈니스 통번역, 통번역 교육급수의 세 분야로 구분해 시행되는 시험이다. 전문통번역 시험은 급수 구분 없이 응시하며 득점에 따라 1등급 혹은 2등급 자격을 부여한다. 비즈니스 통번역 시험은 3개 등급이며, 가장 낮은 등급인 3급은 영어에만 실시되고 교재에서 80% 이상 출제한다. 통번역 교육 급수는 1~8급으로 구분되는데, 초,중,고 교과서 독해/작문과 듣기/말하기 파트 범주 내에서 출제된다. 그 밖에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에 대해 한국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양방향 번역 시험이 있으며, 취득 점수에 따라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부여한다. 통역 시험에는 앱을 활용하는데, ITT 앱을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통역 시험 지문을 듣고 답을 녹음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번역 시험은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는 지면 필답 고사이며, 전문 통번역 시험과 비즈니스 시험에서는 종이 사전이나 전자 사전의 지참이 허용되나 교육 급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실시하는 ‘IP번역사 자격검정시험’은 ‘IP번역 관련 업무 종사(예정)자 및 프리랜서 번역가’를 대상으로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바이오 중 응시자가 선택한 분야의 특허 명세서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서류의 한영 번역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총 3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단계인 3급은 선택한 전공 분야의 지식재산 번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급은 중급 수준의 지식재산 번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1급은 고급 수준의 지식재산 번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타인의 번역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지 평가한다. 3급 시험에는 응시제한이 없으나 2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급 시험 합격자이거나 3년 이상의 지식재산 번역 실무 경력자이어야 한다. 1급 검정 시험에는 2급 시험 합격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지식재산권 및 제도의 이해’와 ‘지식재산번역’ 두 가지이다. 컴퓨터를 사용해 치르는 시험이며 사전 사용이나 인터넷 검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도 ‘본 자격검정은 시험출제문제와 그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격 유무만 발표하고 응시자 개별 점수, 석차 등은 공개하지 않음’으로 밝히고 있다. 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표 1〉 국내 통번역 자격 시험의 등급 및 출제 과목

번역능력인정 시험		ITT통역번역시험		IP번역사 자격검정 시험				
시험 단체	한국번역가협회	국제통역번역협회의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분야	번역	번역	통역	번역				
등급	1급 전문 번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 BA: 인문, 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li> <li>AB, BA: 인문, 사회</li> <li>양방향 시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NN, BBC, 국내 방송 발취</li> <li>통역: 인문사회, 경제경영</li> <li>번역: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li> <li>양방향 시험</li> </ul>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재산 번역(한영)</li> </ul>			
	2급 우수 번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 2개(100단어 내외)</li> <li>BA 2개(100단어 내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 2개(150단어 내외)</li> <li>BA 2개(100단어 내외)</li> <li>서울형 윤리 문제</li> </ul>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재산권 및 제도의 이해</li> <li>지식재산 번역(한영)</li> </ul>
	3급 실용언어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즈니스 통번역 (1, 2, 3 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 텍스트 2개 (70~100단어)</li> <li>AB 문장 5개</li> <li>3급은 80% 이상 교재에서 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급수 (1~8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교과서 독해/작문에서 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교과서 듣기/말하기에서 출제</li> </ul>					

번역능력인정시험, ITT통역번역시험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한국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양방향의 통번역 능력을 시험하며 합격자에게 인정하는 자격은 여러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IP번역사 자격검정시험은 하위 등급 자격 취득자만이 상위 등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수요를

반영해 한국어→외국어 번역 능력만을 검정한다. 국내 자격 시험을 통해 합격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은 세 등급 혹은 그 이상이나, 대체로 최상위의 두 개 등급 정도가 기본 통번역 능력을 증명하는 수준이며 그 이하의 등급은 실용 외국어 능력을 증빙하는 등급으로 볼 수 있다.

출제 내용은 시험의 성격과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자격 시험의 높은 등급에서는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분야의 시사적인 텍스트를, 낮은 등급에서는 직장인들이 업무 중 접하는 문장을 통번역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전문 시험의 높은 등급에서는 해당 분야 실무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텍스트가, 낮은 등급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과 전문 용어가 출제된다.

사전 사용은 일반 시험의 높은 등급에서만 가능하다. 전문 시험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높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사전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 시험의 낮은 등급 역시 시험의 난이도가 높지 않으므로 사전 사용을 제한한다.

#### 4.1.3 자격의 기능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자격은 그 기능에 따라 능력인정형과 업무독점형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국내 자격 제도는 모두 능력인정형 자격이나 자격 취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은 미미하다.

각 시험의 운영 기관들이 제시하는 합격 혜택은 다음과 같다. 한국번역가협회는 번역가 양성을 목적으로 자격 시험을 실시하면서도 시험 합격이 ‘번역 일거리 제공과 직결되지 않는 번역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며, 자격증을 ‘입시나 취업, 승진, 번역가로서의 활동에 개인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본 시험 1급에 합격한 분으로 번역 경험이 있는 경우, 본 협회에서 번역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한다. 1급 자격 취득 이외에 추가적으로 ‘번역 경험’이 있어야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은 번역능력인정시험이 기본적 번역 능력만을 검정함을 나타낸다.

ITT시험위원회에서는 ITT 통번역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이나 인사평가에 활용하고 프리랜서 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1, 2급 자격증

자격증 소지자는 법무부의 ‘번역문 공증 사무 지침(2013년 10월 1일 제정)’에 따라 ‘번역 공증 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칫 ITT 통번역 자격증을 취득하면 ‘번역 공증 번역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이다. 하지만 위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번역 공증은 ITT 자격이 아니라도 토익, 토플 등 각종 어학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ITT 자격 취득에 따른 혜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도 ITT시험위원회는 홈페이지와 광고를 통해 직원 공채 시 ITT 자격증을 인정하는 기업명을 나열하고, 외국어 능력을 자격 조건으로 하는 구인 공고들을 홈페이지 내 취업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으며 여러 취업 전문 사이트의 링크 또한 제공하고 있다. 결국 ITT 통번역 자격 취득은 통번역사로 활동할 만한 능력을 입증한다기보다는 일반 취업 시 외국어 능력을 증빙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IP번역사 자격 검정 시험은 ‘IP번역 관련 업무 종사(예정)자 및 프리랜서 번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격 취득에 따른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IP번역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혜택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구인 공고를 검색해 보았다. 2016년 7월 15일 ‘특허 번역’을 키워드로 하여 취업 포털 잡코리아를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총 16건의 공고와 인쿠르트에 검색된 20건의 공고 중 특허 번역사 모집 요강에 ‘IP번역사 자격증’을 명시한 것은 없었다.

그림 1 한얼국제특허사무소 ‘바이오 분야 특허 명세서(경력) 초빙 공고’

○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담당업무	자격요건	모집연원
바이오 명세서	특허 명세서 작성 및 명세서 번역	- 학력 : 대졸이상(바이오 분야 전공) - 경력 : 명세서 작성 또는 명세서 번역 3년이상  [우대 사항] - 바이오 분야 석사이상 - 영어, 일어 문서작업 능통	○명

검색된 채용 공고 중 한 특허사무소의 특허 명세서 번역사 초빙 공고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대졸 이상(바이오 분야 전공)’과 ‘명세서 작성 또는 번역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적고 있다. 또 번역회사에서는 특히 번역 인력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 사항을 제시하고, 우대사항으로 ‘바이오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제시하였다. 특히 법률 사무소나 번역회사 모두 특히 번역 인력을 채용할 때 IP번역사 자격 소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국내 통번역 자격 제도들은 번역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인정형 자격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4.2 해외 통번역 자격 제도

### 4.2.1 운영 주체

분석한 해외 통번역 자격 제도 중 국가 자격 제도로는 미국의 법정 통역 자격 제도인 미연방법원통역자격증시험(FCIC)과 미주법원통역사자격인증컨소시엄(SCICC), 호주 국가 통번역사 인증기구(NAATI) 시험이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통번역 자격 제도인 미연방법원통역자격증시험(FCIC)은 1978년 소수언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정통역사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었다(Gonzalez, Vasquez & Mikkelson 1991: 39 - 40, 57 - 58). FCIC 자격은 전문 통역사, 법률 전문가, 시험 전문가들이 개발하여 통번역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는 시험으로, 연방법원 행정처가 관장하고 주법원 사법행정 연구소가 시행한다(ibid.: 523 - 25). FCIC 시험이 검정하는 언어는 영어와 스페인어에 국한되어 있어 이후 각 주 차원에서 주법원통역사자격인증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어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미주법원통역사 자격인증컨소시엄(SCICC) 시험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통번역은 무역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호주는 공식 언어가 영어이고 교역 상대국 역시 주로 영어권 국가이므로 대외 교류에 필요한 통번역 보다는 지역 사회 통역에 대한 수요가 크다. NAATI 시험 역시 주로 지역사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통번역 자격 제도이다(Pym, Grin, Sfreddo & Chan 2013: 62). NAATI 시험은 호주 국가 통번역사 인증기구(NAATI)가 운영한다. NAATI는 원래 호주 이민국의 일부였으나 1977

년 별도의 정부 기관으로 독립하였고 2001년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소유한 공기업이 되었다(ibid.: 64).

이상과 같이 미국 법정통역, 호주 NAATI 통번역 자격 제도는 이민자 등 소수언어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통합이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해외의 통번역 국가 자격 제도는 대민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 분야에서 정부 기관 혹은 산하 단체가 운영한다.

민간 통번역 자격 제도로는 캐나다 번역사·전문용어전문가·통역사위원회(CTTIC) 시험, 전미번역사협회(ATA) 번역 시험, 그리고 미국 내 의료 통역 자격 제도인 전미의료통역사자격증위원회(NBCMI) 시험과 보건통역사자격증위원회(CCHI) 시험이 있다.

캐나다 번역사·전문용어전문가·통역사위원회(CTTIC)는 1956년 설립된 캐나다 통번역사협회를 공식적으로 계승한 단체로 1970년 창립되었다. 캐나다 내에서 주별로 구성되어 있는 통번역사 협회들의 대부분은 CTTIC에 속해 있다(ibid.: 60). 캐나다와 ISO의 번역 품질 표준 제정에 참여하였고(박지영 2015: 38) 대외적으로는 국제번역가연맹(FIT)에서 캐나다를 대표한다.

전미번역사협회(ATA)는 세계 100여국에 산재해 있는 통번역사, 교육자, 프로젝트 매니저 뿐 아니라 웹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통번역회사, 병원 등 고객 집단 또한 회원으로 두고 있다. CTTIC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번역사 역량 개발을 위해 번역 자격 제도를 실시하고 번역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법정 통역과 달리 미국의 의료 통역 자격 제도는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 통역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전미의료통역사자격증위원회(NBCMI)와 의료통역사인증위원회(CCHI) 모두 국내외의 다양한 의료 통역사 협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이다. 소수인종보건국, 미국병원협회 등 수요처 역시 이러한 기관의 창립과 자격 시험 개발에 참여했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 해외의 민간 통번역 자격 제도는 통번역 종사자 협회가 통번역 종사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통번역 사용자에게 서비스 품질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이들 협회는 자격 제도와 함께 교육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모의 시험 개최와 채점 결과에 대한 상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

한다. 기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도 재인증 제도를 두어 자격증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통번역 경력을 쌓고 세미나 수강, 외국어 지도, 해당 언어 사용국 체류 등을 통해 언어 실력을 유지, 향상시킬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 자격인 FCIC, SCICC, NBCMI, CCHI 시험은 해당 분야의 수요처의 후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자격과 차이가 있다. 전문 시험의 도입과 운영에 수요자 참여는 시험의 타당성과 자격 취득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 자격 제도의 효용을 향상시킨다.

#### 4.2.2 검정 방법

해외 통번역 자격 제도는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시험과 그렇지 않은 시험이 있다. NAATI 제외하면 본 논문에서 분석한 해외 자격 제도들은 모두 전자에 해당하며 합격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에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반 자격인 ATA와 CTTIC 시험은 응시 자격을 해당 협회에 가입된 회원으로 제한한다(Hale, Garci, Hlavac, Kim, Lai, Turner & Slatyer 2012: 23). 통번역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서류 심사나 시험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ATA와 CTTIC 시험이 단순 외국어 실력이나 기초적 수준이 아닌 실무 통번역 능력을 검정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응시 전 협회 가입을 통해 통번역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과 경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 자격인 법정 통역, 의료 통역 시험은 1차 필기 시험 합격자에게만 2차 통역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FCIC, SCICC, CCHI, NBCM 자격의 1차 필기 시험에서는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과 전문 용어, 업무 진행 절차에 관한 지식, 직업 윤리, 문화적 능력을 검정한다. 의료 통역 시험에만 문화적 중재 능력과 관련된 과목이 포함된다는 점은 법정 통역 시험과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통번역 실기 시험의 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TA와 CTTIC 시험은 각 약 200단어 길이의 텍스트 3개 중 2개를 선택하여 3시간 동안 번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ATA 시험에서는 번역 실무를 고려해 수요가 높지 않은 감성적인 텍스트는 출제하지 않으며, 모든 텍스트는 번역명세서와 함께 제시하여 기재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감점한다(Koby & Champe 2013: 160-162). CTIC 시험에는 번역명세서가 별도로 제시되지는 않으나 출제된 모든 텍스트에는 자료의 출처와 발행일이 기재되므로 원천 텍스트 작성자, 작성 목적 등을 유추할 수 있다. 두 시험 모두 사전 참조를 허용하는 지필 고사이다.

〈표 2〉 해외 통번역 자격 시험의 등급 및 출제 과목

구분	번역	법정 통역	의료 통역
응시 자격	• 협회 회원	• 법정 통역사 희망자	• 의료 통역사 희망자
필기 시험	<b>Part 1 : 필수 지문</b> - ATA : 시사주제 - CTIC : 일반 텍스트	<b>Part 1 : 언어 능력</b> - FCIC : 독해, 문법, 일반 어휘, 동의어, 속어 - SCICC : 문장 완성, 유사어, 속어, 반대어 - CTIC : 짧은 법률 번역	<b>Part 1 : 의학용어</b> - CCHI : 의학용어, 의학 지식 - NBCMI : 의학 용어, 의학 지식
	<b>Part 2 : 선택지문</b> - ATA : 과학기술의학, 법률경영재무 중 택 1 - CTIC : 기술과학의학, 경제행정 중 택 1	<b>Part 2 : 전문 용어 및 지식</b> - FCIC : 법률 용어/표현의 번역 - SCICC : 법정 용어와 용법 - CTIC : 법률 지식, 객관식/단답형	<b>Part 2 : 의료상황</b> - CCHI : 의료 상황, 의료진과의 상호 작용, 통역 준비 - NBCMI : 의료 통역사의 역할, 윤리, 표준 업무 관행, 관련 법규
구두 시험		<b>Part 3 : 윤리 및 업무 절차</b> - FCIC, SCICC : 직업 윤리 - CTIC : 시나리오에 답하는 문제	<b>Part 3 : 문화적 능력</b> - CCHI : 문화적 대응력 - NBCMI : 문화적 능력
		<b>Part 1 : 문장 구역</b> - FCIC : 경찰 수사 보고서, 선서 진술서, 법률문서 - SCICC : 양방향 문장 구역	<b>Part 1 : 문장 구역</b> - CCHI : 문화자가 존재하는 상황 제시, 번역 - NBCMI : 2개 텍스트 문장 구역
		<b>Part 2 : 순차 통역</b> - FCIC : 증인 신문, 반대 심문 역할극 - SCICC : 양방향 대화, 노트테이킹, 반복청취 - CTIC : 무의 재판	<b>Part 2 : 순차 통역</b> - CCHI - NBCMI : 미니 시나리오 통역
		<b>Part 3 : 동시 통역</b> - FCIC : 1인 진술 질문과 답변 - SCICC : 영어 → 외국어	<b>Part 3 : 동시 통역</b> - CCHI - NBCMI

통역 실기 시험은 문장 구역, 순차, 동시 통역 과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통역 능력을 평가한다. FCIC와 SCICC 통역 시험에서는 법정 소송과 관련된 수사 보고서나 선서 진술서 등의 자료를 문장 구역으로, 증인 신문 등 말 차례 바뀔 때 잦은 답화는 순차 통역으로, 증인 진술 등 한 사람이 길게 발화하는 부분은 동시 통역으로 출제한다. NBCMI 시험에는 순차 통역과 시역이, CCHI 시험에는 순차 통역, 동시 통역, 문장 구역, 번역이 모두 출제된다.

NAATI의 시험<sup>4)</sup>은 회원 가입이나 필기 시험 합격 등 응시 자격의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자격의 등급을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초보적인 수준부터 전문 통번역사 중에서도 상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의 통번역 능력까지 검증한다.

#### 4.2.3 자격의 기능

분석한 해외 통번역 자격 제도는 면허가 아니므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통번역 시장에 독점적인 참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번역 능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증빙으로서 활용된다. ATA 번역 자격증은 미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으로, 자격증 취득 자체가 통번역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으나 채용 시 참고자료가 된다. 미국에서는 대형번역회사 몇 개가 번역시장을 주도하며 유럽시장에도 영향력을 갖는데, 이러한 번역회사들도 ATA 자격증의 가치를 인정한다(Pym et al. 2013: 58). 따라서 해외 통번역 자격 제도는 자격 소지자의 시장 진입 및 업무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통번역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통번역 업계의 위상을 향상시킨다.

연방법정통역사 자격증(FCIC)을 취득한 통역사는 사법위원회에 공인 통역사로서 등록되나, 자격증 미소지자 역시 연방 법원에서 통역할 수 있다. FCIC 시험은 영어와 스페인어에 대해서만 실시하므로,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연방법원에서 통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Gonzalez, Vasquez & Mikkelson 1991: 523 - 25). FCIC 자격이 업무독점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8년 이전 약 \$10,000-\$14,000 수준이었던 법정통역사의 정부 연봉 등급은 법정 통역 자격 제도 시행 후 자격을 소지한 상급 통역사의 연봉을 기준으로 \$26,261~\$34,136까지 증가하여(ibid.: 60) 자격증 도입이 통역사의 보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CTTIC와 NAATI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혜택을 준다. CTTIC 자격증은 민간 자격이지만 뉴브런즈윅,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법에 따라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만이 공인 통번역사로서 공인번역사(Certified Translator), 공인법정통역사(Certified Court Interpreter), 공인국제회의통역사

4) NAATI 시험은 구체적인 출제방향을 공개하지 않고 모의 시험지를 유료 판매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출제 과목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Certified Conference Interpreter), 공인전문용어관리자(Certified Terminologist)라는 직함을 쓸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통번역 용역 입찰에 자격증 소지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Pym et al. 2013: 61). NAATI는 국가 자격 시험의 집행 기관인 동시에 지역사회 통역 시장 내 주요 고용주이므로, NAATI 자격증 소지 여부는 고용과 직결된다.

## 5. 결론

2016년 현재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번역 자격 제도를 운영 주체, 검정 방법, 자격의 기능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통번역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단체는 통번역 종사자 협회, 교육사업자, 정부 유관기관으로 그 성격이 다양하다. 곧 도입될 의료통역검정시험 역시 보건복지부가 실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의료관광 등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에서 정부가 통번역 자격 제도를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사회 통합, 인권 보호 등 대민 서비스 성격을 띠는 분야에서 정부 기관이 통번역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서는 통번역 인력의 역량 개발을 위해 통번역 종사자 협회가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데, 전문 자격은 해당 분야의 수요처가 자격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국내 통번역 자격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자격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한다. 반면 NAATI를 제외한 해외 자격 제도는 통번역 실기 시험 응시 가능 조건을 협회 회원 가입이나 1차 필기 시험 합격자로 제한하는 대신, 최종적으로 수여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국내 통번역 자격 취득은 통번역 시장 진입이나 통번역사로서의 경력 개발과 연계되지 못한다. 반면 해외 정부 자격 소지자는 수입과 공식 요율에 따른 통번역료 수령 등 공인 통번역사로서 혜택을 누리며, 민간 자격 역시 수입에 유리하게 활용된다.

결론적으로 국내 통번역 자격증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외국어 시험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 시험은 청취와 독해 위주의 수동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외국어 시험과는 달리, 말하기와 작문이라는 능동적 외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국내 시험이 통번역 자격 제도로서 사회적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평가 이론에 따르면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의도한 능력을 시험하는 것, ‘신뢰도(reliability)’는 누가 측정하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Koby & Melby 2013: 176).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통번역 자격이 능력인정형 통번역 자격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통번역사의 직무 분석 결과에 근거해 출제함으로써 시험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번역사협회는 프로젝트 매니저, 사기업과 공공 기관에 근무 중인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출제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자격 시험의 타당성을 높였다(ibid.: 182). 특정 분야의 통번역 능력을 검증하는 FCIC, SCICC, CCHI 시험 역시 법정 통역사와 의료 통역사의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된 자격증이다. 따라서 이들 시험은 일반적인 통번역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과는 달리, 해당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나 표현 뿐 아니라 진료나 소송의 흐름에 관한 상황적 지식과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윤리적 소양을 측정하는 과목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IP번역사 시험을 제외한 국내 통번역 자격 시험은 직무 분석 실시 여부를 떠나 시험의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번역가협회는 기관의 주요 활동 영역을 ‘우리나라 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으로 소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험 예제는 전형적인 언론 기사라기보다 신문, 잡지에 실린 에세이 등 감성적인 텍스트를 다수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시험 출제 범위는 시사적인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 자격 시험인지 문학 작품 번역 능력을 검증하는 전문 시험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다. ITT통역번역시험 역시 전문통번역, 비즈니스 통번역, 통번역 교육 급수의 세 분야에 분야별로 최소 두 개에서 최대 여덟 등급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시험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정 분야를 명확히 하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번역사들의 직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출제함으로써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닌, 실무에서 실제 요구되는 수준의 통번역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응시자를 일반인이 아닌, 현업 통번역사나 최소한 통번역 시장 진입 희망자로 한정해야 한다.

둘째, 채점 기준과 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모든 국내 통번역 자격 시험은 합격, 불합격의 결과나 취득 점수만을 통보할 뿐 채점 내용의 확인이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ATA나 CTTIC 시험은 채점 결과 확인과 이의 제기 및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ATA는 응시자에게 ‘18-25점’, ‘26-35점’, ‘36-45점’, ‘46점 이상’과 같이 획득한 점수의 범위만 통보하고 시험 결과를 설명하거나 시험지를 반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합격자에 한해 요청 시 채점된 시험지에 표기된 예러가 무엇인지 공개한다. 채점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비용을 내면 채점 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재검토 이후에도 결과가 번복되지 않으면 원문, 채점된 답안지의 사진과 오류의 수를 적어 재검토를 요청한 응시자에게 보내준다. CTTIC 역시 시험지를 반환하지는 않으나, 불합격 시 채점된 시험지 확인을 요청하면 지정된 협회 내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달 이내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항소하면, 제 3의 채점자가 원 채점결과를 검토하여 기존의 채점 결과를 확정할지 또는 다시 채점할 지 결정한다. 재채점을 통해 합격하는 경우 지불한 재심 비용을 반환한다. 채점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정책은 시험의 신뢰성을 입증한다. 또한 불합격자는 채점 내용을 확인하여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셋째, 통번역에 전문성을 갖춘 통번역대학원 등의 기관이 통번역 비전공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에 통번역 자격 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 한국번역가협회는 해외 민간 자격 제도 운영 주체인 ATA, CTTIC와 같이 FIT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협회 회원이 시험을 출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ATA, CTTIC 자격 시험 출제자는 통번역 교육을 받고 다년 간의 실무 경력을 갖춘 해당 자격증의 소지자로 통번역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다. 반면 시험을 출제하는 한국번역가협회의 회원은 정회원이라 해도 반드시 뛰어난 통번역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회원 가입 자격을 폭넓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번역가협회의 정관에 명시된 정회원 자격 중에는 ‘교육 기관에서 7년 이상 외국어 교사로 재직한 자’, ‘외국어 분야의 대학 전임 강사 이상으로 번역 실적이 있는 교직원’, ‘외국에서 상당한 기간 체류하여 전문 번역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언어 실력이나 약간의 번역 업적, 검증되지 않은 추정된 번역 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출

제자 및 채점자는 현재 노출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신원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ITT통역번역시험  
 은 권위를 인정하기가 더욱 힘들다.

국내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부에 의한 번역청 설립이나 통번역 자격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물론 정부가 주도한다면 자격 제도의 신뢰  
 성과 운영상의 효율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격기본법 3조에 따르  
 면 통번역은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방 치안 교육 및 국  
 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등 정부가 직접 자격 제도를 운영해야 한  
 다고 정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식재산번역과 의료 통역과 같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국가 기관에 의한 통번역 자격  
 제도 도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번역대학원 등 통번역 분야에 전문성  
 을 갖춘 민간 기관들이나 통번역 연구자들은 정부의 관심만을 촉구하는데서 벗  
 어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번역 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전문 인력들은 주로 회의통역 시장에서 활  
 동하거나 주요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된 인하우스 또는 프로젝트 통역사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비전공자들이 활동하는 통번역 분야도 다양하다.  
 특히 이러한 분야에서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통번역 능력을 검증할  
 장치가 없는 실정이므로 통번역 자격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사회적 효용이 높  
 을 것이다. 나아가 자격기본법 제 10907호는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자격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국가가 인정  
 하는 자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 또한 열려있다.

### 참고문헌

- 고영선, 김두얼, 윤경수, 이시욱, 정완교 (2009)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KDI.  
 광중철 (2010) 「2009년 한국 제1기 의료통역사 교육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11(1): 7-43.

- 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2008) 『국내 법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서울: 법원행정처.
- 박지영 (2015) 「미국, 유럽, 중국, 캐나다, ISO 번역 표준에 관한 복수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16(2): 33-61.
- 박혜주, 권지현, 박애리, 오미형, 김상진 (2005) 『번역사 인증제와 번역 교육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 박혜주,곽성희, 이연향, 정연일, 박소연 (2006) 『번역사 인증제 기본모형 개발 연구』,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 신명훈, 박종성 (2005) 『자격관리 핸드북』,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용철 (2002) 『자격과 면허의 비교연구』,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철자, 곽중철, 정연진, 이하나 (2009) 『의료통역사 인증제도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현희 (2015) 「수어와 구어 통역 교육 발전 양상 비교 연구」, 『번역학연구』 6(3): 273-310.
- 홍정민 (2015) 「해외 선진 사례 고찰을 통한 국내 공공번역 시스템 구축 방안 제언」, 『통역과 번역』 17(2): 81-111.
- Akerlof, George (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488-500.
- Gonzalez, Roseann Dueñas, Victoria F. Vasquez and Holly Mikkelson (1991) *Fundamentals of Court Interpretation: Theory, Policy, and Practice*, North Carolina: Carolina Academic Press.
- Hale, Sandra, Ignacio Garcia, Jim Hlavac, Mira Kim, Miranda Lai, Barry Turner and Helen Slatyer (2012) 『Improvements to NAATI testing』,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Koby, Geoffrey and Gertrud G. Champe (2013) ‘Welcome to the real world: Professional-level translator certification’, *Translation & Interpreting* 5(1): 156-173.
- Koby, Geoffrey S., and Alan K. Melby (2013) ‘Certification and job task analysis(JTA): Establishing validity of translator certification examinations’, *Translation & Interpreting* 5(1): 174-210.

Pym, Anthony, Francois Grin, Claudio Sfreddo and Andy Chan (2013) *The Status of the Translation Profession in the European Union*, London: Anthem Press.

<인터넷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 (2016) 「인증제도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2016년 5월 20일 검색.

<https://standard.go.kr/KSCI/crtfcPotIntro/crtfcSystemIntro.do?menuId=540&topMenuId=536>.

김고금평, 김유진, 박다해 (2016) 「10년 전과 똑같은 번역료... 수상하니 ‘떠들썩’, 내실에는 ‘무관심」, 『머니투데이』, 2016년 5월 20일 검색.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60116510454832&outlink=1>

미연방법원통역자격증시험(Federal Court Interpreter Certification)

<http://www.uscourts.gov/services-forms/federal-court-interpreters/federal-court-interpreter-certification-examination>

미주법원통역사자격인증컨소시엄(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www.ncsc.org/Education-and-Careers/State-Interpreter-Certification.aspx>

보건통역사자격증위원회(Certification Commission for Healthcare Interpreters)

<http://www.cchicertification.org/>

브리시티컬럼비아주 통번역사협회(Society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British Columbia)

<http://www.stibc.org/page/certified%20member%20directory.aspx>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http://www.kst-tct.org/index.php>

전미번역사협회(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https://www.atanet.org/>

전미의료통역사자격증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Certification for Medical Interpreters)

<http://www.certifiedmedicalinterpreters.org/>

지식재산서비스협회 <http://www.ipedu.kr/main>.

알버타주 통번역사협회(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Ontario)  
<http://www.atio.on.ca/>

윤수현 (2016. 4. 26) 「의료한류(Medical Korea) 활성화 위해 범부처가 힘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2016년 5월 20일 검색.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1256&page=1](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1256&page=1)

캐나다 번역사·전문용어전문가·통역사위원회(The Canadian Translators, Terminologists and Interpreters Council) <http://www.cttic.org/mission.asp>

호주 국가 통번역사 인증기구(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https://www.naati.com.au/>

ITT 시험위원회 <http://www.itt.or.kr/>

INT Improvements NAATI Testing Project (n.d.) ‘NAATI Translator e-testing options review’, *NAATI*, May 20. Available at <https://www.naati.com.au/media/1296/translator-e-testing-options-review-310316.pdf>.

INT Project Discussion Paper November 2013 (n.d.) *NAATI*, May 20. Available at <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Language Access Services Section (2011). ‘Court Interpreter Written Examination: Overview’,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May 20. Available at [http://www.ncsc.org/~media/Files/PDF/Services%20and%20Experts/Areas%20of%20expertise/Language%20Access/Written%20and%20Oral/2014%20January\\_Written%20Exam%20Overview%201%2029%2014.ashx](http://www.ncsc.org/~media/Files/PDF/Services%20and%20Experts/Areas%20of%20expertise/Language%20Access/Written%20and%20Oral/2014%20January_Written%20Exam%20Overview%201%2029%2014.ashx)

[Abstract]

**Critical Analysi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Certificates in Korea**Park, Ji-young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certificates in and out of Korea and identified differences as follows. Korea's T&I certifying tests do not require applicants to satisfy any qualifications to sit for an exam and issue certificates of varying levels. They are unique forms of foreign language exams for non-translators and interpreters, hence do not help develop T&I career. In contrast, exams for T&I certificat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subject only those with T&I work experiences or at least those who wish to work as translators or interpreters. The certificate holders enjoy competitive advantages on the market. In Korea, government-sponsored organizations operate T&I certificates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certain industries, such as medical tourism. However, government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issue T&I certificates to promote public interest.

To have reliable and valid T&I certificates, improvements needs to be made in Korea as follows: Test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job analysis of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Grading policies and test results should be disclosed to applicants; Graduate schools of T&I should introduce and operate certificates in areas where T&I demands are satisfied mainly by those who are not trained as translators or interpreters.

▶ Key Words: certificate, accreditation, T&I assessment, T&I competence, job analysis

박지영

고려대학교 KU-MU Translating & Interpreting Program

[jy.interpreter@daum.net](mailto:jy.interpreter@daum.net)

관심분야: 통번역 서비스, 번역 브리프, 통번역 품질 평가, 통번역 프로세스

논문투고일: 2016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2일